

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[별표 3의3] <신설 2023. 12. 27.>

무병화인증표시(제23조의4 관련)

1. 표시

가. 앞면

무병화인증번호(인증기관코드-인증종자업자코드-과종-품종-일련번호)

무병화 인 증 ① 작물명: ⑤ 품종의 생산·수입판매신고번호: ② 품종명: ⑥ 무병화인증일자: ③ 대목명: ⑦ 무병화인증 유효기간: ④ 생산업체명(종자업등록번호): ⑧ 무병화인증기관: 인 증 기 관 명 :	
--	--

나. 뒷면

※ 품종의 특성 및 재배상의 주의사항

2. 비교

가. 바탕색은 흰색으로 표시한다.

나. 무병화인증표시 크기는 10cm(가로) x 3cm(세로) 이상으로 한다.